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을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수급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임금채권보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17604호, 2020. 12. 8. 공포, 2021. 6. 9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그 외에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, 근로자 생계비 용자 신설 등 「임금채권보장법」의 개정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사항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추가 등(안 제10조제1항제3호)

「임금채권보장법」 개정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추가됨에 따라(2020. 12. 8. 시행)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하고, 아울러 체당금의 지급범위 중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제2항제1호에서 “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”으로 규정되어 있으

므로 이에 맞추어 “최종 3년간의 퇴직금”을 “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”으로 수정함

나. 체당금수급계좌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(안 제18조 신설)

1)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금융기관의 폐업, 업무정지,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, 이 경우에는 체당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

2)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권자가 제9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하도록 함

다. 권한의 위임·위탁 사항에 근로자 생계비 용자 및 체당금수급계좌 관련 내용 추가(안 제24조제2항제1의2호, 제3의2호)

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당금 지급,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에 관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, 「임금채권보장법」 개정을 통해 체당금수급계좌 및 근로자 생계비 용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위탁 규정에도 추가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임금 또는 휴업수당”을 “임금·휴업수당·출산전
후휴가기간 중 급여”로, “퇴직금”을 “퇴직급여등”으로 한다.

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8조) 제1항 중 “채당금
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”를 “수급권자가”로, “법 제11조제2항”을 “법
제11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채당금수급계좌)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“정보통신장애나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당금수급계좌(이하 “채당금수급계
좌”라 한다)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, 업무정지, 정보통신장애 등
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채당금을 채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
없는 경우
2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당금을 채당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
이내에 채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
우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당금을 채당금수
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채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(이
하 “수급권자”라 한다)에게 해당 채당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
있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권자가 제9조에 따라 채당금의 지급을 청구
할 때 원하는 경우에는 채당금을 채당금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
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해야 한다.

제24조제2항제1호의2 중 “사업주 용자”를 “사업주 용자 및 임금등 체불
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용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를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법 제11조에 따른 채당금수급계좌를 통한 채당금 지급에 필요한
사항

제25조의2제1호의2 중 “사업주 용자”를 “사업주 용자 및 임금등 체불 근
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용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
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) ①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.	제10조(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	3. ----- 임금·휴업수당·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----- 퇴직급여 등 -----
4. 5. (생략)	4. 5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18조(체당금수급계좌)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“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	1.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체당금수급계좌(이하 “체당금

	수급계좌”라 한다)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, 업무정지,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
	2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체당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	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(이하 “수급권자”라 한다)에게 해당 체당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	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권자가 제9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원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체당금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해야 한다.
제18조(체당금의 수령 위임) ①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	제18조의2(체당금의 수령 위임) ① 수급권자가 -----

랍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해당 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가족 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. ② (생 략) 제2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생 략)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 른 근로복지공단(이하 “근로복 지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 1. (생 략) 1의2.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<u>사업주 융자</u> 2.·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~ 11. (생 략) ③ (생 략) 제2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고용노동부장관(제24조에 따라	----- ----- 법 제11조의2제2항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2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----- ----- <u>사업주 융자 및 임금등 체불 근로자 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 3의2. 법 제11조에 따른 해당금 <u>수급계좌를 통한 해당금 지급 에 필요한 사항</u> 4. ~ 11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25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-
---	--

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·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 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(생 략) 1의2.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<u>사업주 융자</u>의 신청 및 확인 등에 관 한 사무 1의3. ~ 7.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1의2. ----- ----- <u>사업주 융자 및 임금등 체불 근로자 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</u>----- 1의3. ~ 7.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563